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나47899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우, 이루다, 정우정, 허다운

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탁동헌

변 론 종 결 2021. 7. 9.

판 결 선 고 2021. 8. 13.

제1 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9. 3. 선고 2019가단21201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서울 구로구 J아파트 K동 L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3/10 지분에 관하여 2019. 9.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자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및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의 명의로 취득하기는 하였지만 그 취득자금의 대부분을 피고의 남편인 B이 제공하였음이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중 적어도 3/10 지분은 B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살피건대, 부부의 일방이 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다른 일방이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로는 그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 외에도 대금의 증여나 대여 등 다른 원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설시한 법리와 같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금을 부담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원고의 신청에 따라 제출된 증거들(증인 B의 증언,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등)을 보태어 볼 때, 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 대금의 상당 부분이 B 명의의 계좌를 거쳐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다음 분양자(E 공사; 변경 전 명칭은 D공사)에게 지급되었고, 그러한 돈의 출처를 거슬러 올라가면 위 아파트의 취득 이전에 피고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하던 주택(서울 구로구 G 소재 H연립 1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돈 및 위 주택의 임차 이전에 피고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하던 아파트(부천시 원미구 M건물 N호)를 매도한 돈으로서, 각 입출금관계의 흐름상 B 명의의 계좌를 거쳐 갔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마련하기 위해 피고가 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의 이자도 B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을 제2, 4호증, 을 제6호증의 1, 2,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른 사정들 즉, 위 G 소재 주택의 임차인 명의를 최초 임차시(2011. 4. 18.)에 B의 명의로 하였다가 그 임대차계약의 갱신시(2013. 6. 10.)에는 피고의 명의로 변경되었고, 위 부천시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도 그 취득시(2009. 10. 9.)부터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유지된 점, B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사고(기한이익 상실) 및

신용보증 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원고의 대위변제는 모두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일인 2013. 11. 18.보다 거의 1년 후인 2014. 10. 22. 및 2014. 11. 26.에서야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앞에서 본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에 B이 위 아파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자 하면서도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피고의 명의를 이용하려는 의사 외에 증여 등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만큼 원고가 주장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의 특유재산 추정을 반복하고 B과의 명의신탁관계 내지 대금 부담비율에 따른 지분 공유관계가 성립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성배, 판사 유창훈, 판사 우인성